



분류기호 **사상 462.12** 기안용지 전결규정 12조 8항
 시번호 **201** (전화번호 421) 국 장전결사항

처리기한 기안자 결재자 **산영국장**
 시행일자 **67. 2. 21** 기안자 서명 **최영선** 결재
 보존번호 기안일자 **1967. 2. 17** 결재일자 **67. 2. 21**

보령과장
 조청계장

고시제 2호

합 조 **공부과장**
행정과
 경수 유실 조 **각안 참조**
 계 목 **67년도 총축감사 실시**

1안 개부결재
 추산법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
 의하여 67년도 정기 총축감사를 다음 각안과 같이 실시
 조치 합니다

2안 고시 (안)
 서울특별시 고시 제 7 호
 추산법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
 규정에 의하여 1967년도 정기 총축감사를 다음과

한법
신우

같이 실시 ~~한다~~ 한다

1967년 2월 22일

서울특별시시장 김 현 유

- 1. 실시 범위 서울특별시 전역
- 2. 실시 기간 1967. 3. 25 ~ 1967. 4. 20.
- 3. 검사대상 한우, 육우, 유우, 마, 번양, 사양, 돈.
- 4. 검사장소 종축검사 신청서에 의한 현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장소
- 5. 검사방법 종축검사를 받고자하는 가축은 가축

구입자에게 신청하면 종축검사원이 순회하여 검사 할 수 있다

제 3 안

우 신 수신처 참조

참 조 산 영 과 장

제 목 등 건

67년도 정기 종축검사를 별첨과 같이 피 하여야 하며 양주자에게 철저히 주시킴으로 사업수행에 만전을 기할 것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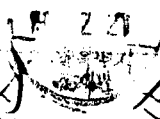
첨 부 고 시 문 1부 (제2안 피문 이기 시행함)

우 신 처

신청 1~9

제 4 안



수  공보실장 발신  산 영국장
제 목 동 전

축산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취정에
의하여 별첨과 같이 67년도 정기 종축검사를 실시
할 것을 고시하였기 시로에 게재하여 본관에게 널리
주지 시켜 주시길 바랍니다
첨 부 고 시 문 1부 끝 (제2안 고시문이기 시행함)

참 고 關係法抜萃

畜産法 第31條 (種畜検査) ① 서울特別市長 釜山市長
또는 道知事 (以下 地長) 이라한다 는 農林部令
定하는 바에 의하여 每年定期的으로 種畜検査를
實施한다.

畜産法 施行規則 第21條 (種畜検査 期日 告示)

① 法 第31條 亦 項의 規定에 依한 種畜検査는
每年 3月 또는 4月에 實施한다.

② 서울特別市長 釜山市長 또는 道知事는 定期検査와
臨時検査의 期日 場所 其他 必要한 事項을 定하여
検査 期日 30日前에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.